W - 5 - 2021

# 화학물질의 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관한 기술지침

2021. 1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용현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용현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미주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중래

- 제·개정 경과
- 2009년 9월 산업보건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5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5년 5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6년 10월 산업독성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21년 9월 산업독성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OECD Guideline for testing of chemicals (TG 423, Acute oral toxicity-acute toxic class method)
- 관련법규, 규칙, 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 및 관리), 제 108조(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)
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(유해인자의 분류기준), 제143조(유해인자의 관리)
  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3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관한 기준)
  - 고용노동부 예규 제166호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)
  -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0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화학물질의 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 관한 기술지침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(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평가 및 관리),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-46호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, 급성경구독성시험 항목에 대한 최신 시험법 (독성등급법)을 제시하여 실험동물의 사용수를 줄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급성 영향 및 건강장해에 관한 독성시험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급성경구독성"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24시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 경구투여한 후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악영향(Adverse effects)을 말한다.
  - (나) "투여량(Dose)"이라 함은 투여하는 시험물질의 양을 말한다. 일반적으로 단위는 시험동물의 체중 당 시험물질의 무게(예, mg/kg)로 표시한다.
  - (다) "빈사 상태(Moribund state)"라 함은 시험물질의 독성에 의하여 시험동물이 죽어가는 상태 또는 생존할 가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.
  - (라) "우수실험실 운영규정 ("Good Laboratory Practice", 이하 "GLP"라 한다)"이란

## KOSHA GUIDE W - 5 - 2021

유해위험성 실험실운영규정을 말한다.

- (마) "GHS(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)"이라 함은 국제적으로 조화된 화학물질의 분류시스템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 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시험계획서 작성

## 4.1 목적

독성등급법에 의한 급성경구독성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.

## 4.2 시험계획서 작성 시기

- (가) 시험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시험책임자로 지정되면 시험물질의 조제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시험계획서를 작성한다.
- (나) 시험책임자는 시험계획서가 운영책임자에 의하여 승인되면,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의 심의 및 동물구입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.

### 4.3 시험계획서 작성방법

시험계획서에는 표지 및 시험개요, 시험세부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.

## (가) 표지 및 시험개요

표지 및 시험개요에는 시험번호, 시험명, 작성일, 시험일정, 의뢰기관, 시험기관명, 각시험부문별 확인 및 승인사항이 나타나도록 한다.

W - 5 - 2021

## (나) 시험세부계획

시험세부계획에는 1. 시험목적, 2. 적용된 시험방법, 3. 사용된 시험계, 4. 동물사육환경, 5. 사료, 6. 음용수, 7. 시험물질 및 매체대조물질 8. 투여방법. 9. 시험항목, 10. 통계처리, 11. 보관될 기록 및 자료, 10. GLP 대응 및 신뢰성 보증, 11. 참고문헌, 12. 첨부자료 등으로 구성한다.

## 5. 독성시험 수행

시험책임자는 작성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성시험을 수행한다.

#### 5.1 시험의 준비

#### 5.1.1 동물입수 준비

- (1) 시험책임자는 동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동물실을 결정한다.
- (2) 동물관리책임자는 사용할 동물실의 환경, 청소 소독, 설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도록 준비한다.
- (3) 사용할 기자재가 완전히 갖추어 진 것을 확인한다.
- (4) 개체식별카드는 미리 작성하여 사육상자 전면에 부착한다.
- (5) 동물실 사용기록지를 작성하여 사용할 동물실의 전면에 부착한다.

#### 5.1.2 시험동물

- (1) 연령이 8~12 주령 된 시험용 랫드(다른 설치류도 가능)를 사용하며 개체 간 체중 차이는 평균체중의 ±20 %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(2) 시험은 한쪽 성을 사용하는데 암컷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수컷을 사용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한다.
- (3) 암컷은 과거에 새끼를 낳은 적이 없고 현재 임신 중이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.
- (4) 시험에 사용할 개체는 시험 시작 전 최소 5 일 이상 실험실에서 순화시킨 건강한 동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.

W - 5 - 2021

## 5.1.3 사육조건

- (1) 사육실은 온도가 22℃±3℃, 습도가 30~70%가 유지되도록 한다.
- (2) 사육은 암·수를 구별하여 실시하며 각 개체의 상태 관찰이 용이하도록 밀도가 높지 않도록 한다.
- (3) 조명은 명/암이 12/12 시간이 되도록 조절하며, 시료와 물을 적절히 공급한다.

#### 5.1.4 시험물질

- (1) 시험물질은 적당한 용매에 용해 또는 현탁시킨다. 시험물질은 수용성 액이 우선 적으로 권장되나, 비수용성인 물질의 경우 오일(예, corn oil) 또는 기타 다른 용 매를 사용한다.
- (2) 이때 사용하는 용매는 사전에 독성 여부와 특성이 잘 알려진 것을 사용한다.

#### 5.2 시험방법

#### 5.2.1 원리

- (1) 한계시험 또는 본시험에서는 단일 성(가능한 암컷을 우선으로 함)의 동물을 사용하여 제시된 용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험한다.
- (2) 시작 용량은 기존의 독성자료에 근거하여 선정하는데 사망과 같은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으나 그 외의 독성 증상이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용량으로 한다.
- (3) 시작 용량의 경과에 따라 다음 용량을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투여한다.

#### 5.2.2 시험물질의 투여

- (1) 경구 투여하는 시험물질의 양은 시험동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, 일반적으로 최대 1 ml / 100 g(체중)을 넘지 않도록 한다. 다만 수용액의 경우는 2 ml/ 100 g까지 허용한다.
- (2) 투여는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소량씩 나누어 실시한다. 이때 투여 간격은 24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한다.

W - 5 - 2021

- (3) 시험물질을 투여하기 전날 저녁부터 물을 제외한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체중을 측정한다(마우스의 경우는 투여 전 3~4시간 전부터 먹이 공급을 중단한다).
- (4) 시험물질의 경구투여 후 3~4시간 후(마우스의 경우는 1~2시간 후)부터 먹이를 공급하다.
- (5) 시험물질을 소량씩 나누어 투여할 경우, 투여 간격을 고려하여 소량씩 여러 번물과 먹이를 적절히 제공한다.

#### 5.2.3 한계시험(Limit test)

- (1) 한계시험은 해당 시험물질 또는 시험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거나 무독성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수행한다.
- (2) 한계시험은 한 가지 농도인 2,000 mg/kg(체중)을 투여한다. 시험물질의 투여는 6 마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3마리씩 2단계로 수행한다. 1단계에서 투여한 3마리에서 관찰되는 사망(또는 빈사상태) 정도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. 사망 (또는 빈사상태) 개체수가 0~1마리의 경우는 2 단계에서 3마리에 대해 동일농도 (2,000 mg/kg)를 재차 투여하며, 이때 0~1마리가 사망(또는 빈사상태)하는 경우, 시험물질을 GHS 카테고리(Category) 5로 등급을 분류한다. 한편 1 단계 또는 2 단계에서 사망(또는 빈사상태) 개체수가 2~3 마리로 발생하는 경우, 이보다 저 농도(300 mg/kg)에서 시험을 수행한다(그림 1 참조).
- (3) 시험물질의 독성이 없다고 예상되거나 관련 정보 및 적정 사유가 있는 경우, 한 계시험을 5,000 mg/kg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. 이때 1마리에 먼저 투여했을 때 바로 사망하면 2,000 mg/kg부터 다시 시험을 수행한다. 반면, 사망하지 않는 경우순차적으로 2 마리에 계속 투여했을 때 모두 사망하지 않는 경우 (3마리 모두사망하지 않는 경우)는 미분류(Unclassified) 등급으로 구분하며, 1 마리 이상 사망할 경우 2,000 mg/kg 농도에서 시험을 수행한다(그림 1 참조).
- (4) 한계시험의 관찰기간 및 방법은 본 시험에서와 동일하게 한다.

## 5.2.4 본시험

- (1) 각 시험용량에 대해 단일 성(암컷을 우선으로 함)인 3 마리를 시험동물로 사용한다.
- (2) 시험 시작은 제시된 용량(5, 50, 300, 2,000 mg/kg) 가운데서 독성 증상(사망 또는 빈 사상태)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용량 하나를 선택하여 3마리씩 투여하고, 이때

W - 5 - 2021

나타난 결과를 통해 다른 농도에서 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(그림 1~4 참조).

- (3) 상기 4 가지 고정된 용량 가운데 2,000 mg/kg에서 시험을 시작하는 경우는 이를 한 계시험이라 할 수 있다.
- (4) 시험물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의 독성정보가 없는 경우, 300 mg/kg 용량으로 시험을 시작한다.
- (5) 관찰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 실시하는데 관찰기간은 고정적이지는 않으며 독성 반응, 속도, 회복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(6) 관찰은 투여 후 30 분 이내에 적어도 한번 관찰하고, 특히 투여 후 처음 4시간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도록 한다. 이후 14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관찰한다.
- (7) 시험물질의 투여 후 시험동물의 증상(사망 또는 빈사상태)이 명확히 관찰된 경우, 다음 시험단계로 진행한다. 빈사 상태의 동물은 안락사 시킨다.
- (8) 독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간과 소멸되기 시작한 시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관찰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, 개체별로 기록하여야 한다.
- (9) 관찰은 피부 및 털, 눈 및 점막, 호흡계, 순환계, 자율 및 중추신경계, 행동 유형을 포함한다. 특히 경련, 설사, 유연, 혼수상태 등의 증상은 유의하여 관찰한다.
- (10) 체중은 시험물질 투여 직전과 종료 후 부검 직전 측정하며, 시험기간 중에는 주 1 회 측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체중 변화를 계산하여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.
- (11) 시험 중 사망 및 빈사동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험동물은 부검 후 소견을 기록한다. 필요시 부검 후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통한 소견을 기록한다.

### 5.2.5 시험상의 유의사항

- (1) 부식성이나 자극성이 큰 물질의 경우 시험동물에 고통을 주므로 되도록 시험을 피하도록 한다.
- (2) 시작농도 선택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시험동물의 수를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(3) 시험동물이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경우 안락사 시키며 시험 중 사망한 동물로 처리한다.

## 6. 독성시험결과 및 보고

#### 6.1 결과의 처리

W - 5 - 2021

시험용량, 시험동물 수, 독성증상을 보이는 시험동물 수, 시험기간 중 치사동물 수, 독성발현 및 시간, 용량-독성반응 관계, 부검결과 등을 기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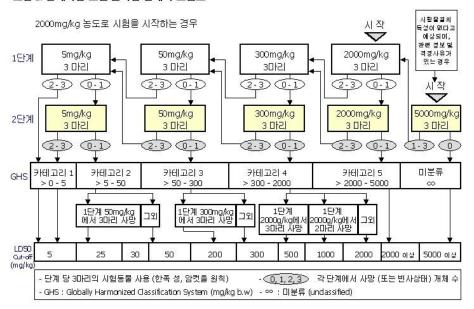
#### 6.2 시험결과의 보고

시험보고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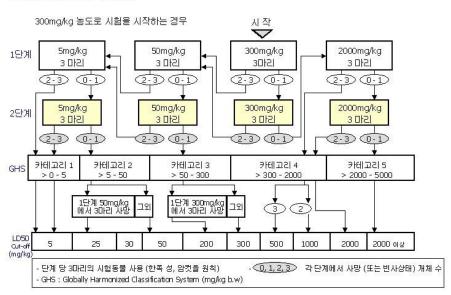
- (1)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
- (2)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 성명
- (3) 시험동물 : 종, 시험동물의 수, 연령, 공급원, 사육조건, 각 개체의 사육 조건
- (4) 시험물질: 물질명과 CAS 번호, 물리적 특성 및 순도, 시험과 관련된 물리화학 적 특성, 시험물질의 안정성
- (5) 시험용매명 및 선정사유
- (6) 시험조건 : 시험기간, 투여용량 수준 및 횟수, 먹이공급 시기
- (7) 시험결과
  - (가) 용량별 독성반응 결과 : 사용 동물수, 체중변화, 사망 및 도살 동물수, 독성증 상을 보이는 동물 수, 피부, 털, 눈, 점막, 소화계, 호흡계, 순환계, 중추신경계 에 나타나는 독성증상(행동유형, 경련, 설사, 유연, 혼수상태 등)
  - (나) 독성증상을 보이는 시간 및 회복 시간
  - (다) 도살기준 및 근거
  - (라) 부검 결과
  - (마) 결과의 해석

## KOSHA GUIDE W - 5 - 2021

#### 그림 1. 한계시험 또는 본시험 단계의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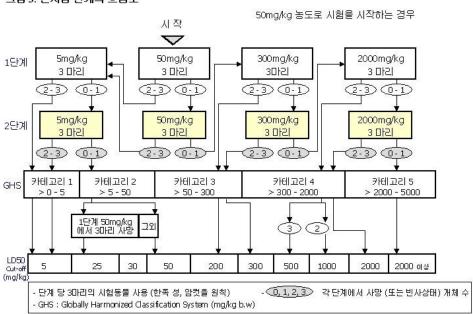


#### 그림 2. 본시험 단계의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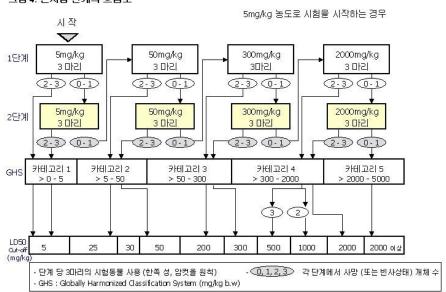


## KOSHA GUIDE W - 5 - 2021

#### 그림 3. 본시험 단계의 흐름도



#### 그림 4. 본시험 단계의 흐름도



## 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1. 10.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중래

○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고시 폐지 등 개정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

- 고용노동부 고시(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, 고용 노동부고시 제2020-57호) 폐지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(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) 인용